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개선방안

주 일 업*

〈요 약〉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소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항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제회의, 정상회의, 의전경호체계, 컨벤션, PCO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추진실태 IV.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개선방안 V. 결론 및 제언 |
|---|

I. 서 론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은 안으로는 정부, 국민, 사회가 일치단결하여 정치,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밖으로는 국제회의를 통해 경제, 안보 등 전략적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에 이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로 경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다수의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진행되는 국제회의는 일반적인 민간주도 국제행사와는 추진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교부, 대통령경호실 등 주요 정부부처, 민간부문 전문가, 컨벤션기획업체(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이하 'PCO')가 다수 참여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를 모색함으로써 국위 선양과 국익 도모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법규, 추진조직, PCO 등 다양한 의전경호체계에 대한 완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회의에 대한 선행연구 중 컨벤션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재성(2014), 박미옥(2014), Cathy Key(2004)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황혜진, 김재연(2006), 이상철, 김태민(2006), 김태민, 김동제(2006), 박남

권, 이영주, 윤명오(2012)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관광산업 중심의 컨벤션 산업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컨벤션 산업 분야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의전체계 분야는 경영 또는 교육적 관점에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지원법규, 추진조직, PCO 등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외교부, 행정자치부, 대통령경호실 등 일부 정부부처 중심의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국제회의 수행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제회의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7호, 시행 2015.9.28.)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회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정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0호, 시행 2015.9.28.)은 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 대해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①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②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③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①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②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60호, 시행 2015.10.27.)

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목적), 국제행사를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정의).

2. 의전

의전(義典)은 영어로 Protocol, Etiquette, Good Manners 등의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Protocol의 경우 그리스어의 ‘Protokollen’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Proto’(맨처음) + ‘Kollen’(붙이다)이 합성된 단어이다. 이는 공증문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맨 앞장에 붙이는 용지를 의미하였으나 이후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공식문서 또는 외교문서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외교통상부, 2008: 17).

따라서 의전은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의전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예(禮)가 제도화된 것이며, 국가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서울시, 2014: 11). 국제의전에 관한 원칙은 1815년 ‘비엔나 회의(Vienna Congress)’에서 처음으로 정해졌으며, 그 후인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서 구체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의전 관행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행정자치부, 2014a: 4).

따라서 의전은 국가 간의 관계 또는 국가가 관여되는 공식행사에서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해진 규범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전, 경호, 홍보 등 핵심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의전관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국제회의 중 컨벤션 산업 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재성(2014), 박미옥(2014),

Cathy Key(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이재성(2014: 6)은 ‘컨벤션 개최지 선호도 측정 지표 개발을 통한 포지셔닝 비교 연구 - MDS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컨벤션 개최지 선호도 지표를 개발하고,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포지셔닝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박미옥(2014: 3-4)은 ‘컨벤션 기업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컨벤션 기업의 고객지향성이 고객충성도와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객만족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다. Cathy Key(2004)는 ‘The Keynote Guide to Planning a Successful Conference’에서 “컨퍼런스 관리자가 숙지해야 하는 조직 구성, 효율적 업무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황혜진, 김재연(2006), 이상철, 김태민(2006), 김태민, 김동제(2006), 박남권, 이영주, 윤명오(2012) 등의 연구가 있다. 황혜진, 김재연(2006: 31)은 ‘국제회의 의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국제회의 의전교육 프로그램을 이론내용과 실무내용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의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철, 김태민(2006)은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민, 김동제(2006)는 ‘한국 민간경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경호시스템 운용적 측면에서는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도입 및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수립, 표준 경호업무매뉴얼 마련, 경호장비의 현대화·첨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권, 이영주, 윤명오(2012)는 ‘대규모 국제행사장의 경호경비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행사 경기장은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위기 발생 시 관람객의 대규모 피난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경영학, 교육학, 경호학 등 관련학문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국제회의 의전경호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추진실태

1. 지원법규

1)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법규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2호, 시행 2009.11.11)과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362호, 시행 2010.10.1)이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2호, 시행 2009.11.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G20 정상회의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를 두며(제1조 목적),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① G20 정상회의 등의 준비를 위한 준비 계획의 수립, ② G20 정상회의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③ G20 정상회의 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 ④ 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제2조 목적).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되며(제3조 구성),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한 ‘대변인’(제6조 대변인), G20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조정단’(제7조 기획조정단),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인력 준비, 의전 및 특별행사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기 위한 ‘행사기획단’(제10조 행사기획단),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에 따른 국내외 홍보, 미디어센터 운영 및 내외신 취재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기 위한 ‘홍보기획단’(제11조 홍보기획단),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제12조 경호안전통제단),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및 홍보기획단 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제13조 실무조정회의),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및 홍보기획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

문단’(제15조 자문단) 등으로 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362호, 시행 2010.10.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동 법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목적), 동 법이 G20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경호안전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되고,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조(제3조 경호안전통제단의 설치). 기타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제6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안전 활동), 제7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준수사항) 등을 통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법규는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2425호, 시행 2010.10.5)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의 주요내용을 타법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된 규정(대통령령 제23248호, 시행 2011.10.26.)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제1조 목적), 정부 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① 정상회의 개최 준비계획의 수립, ② 정상회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③ 정상회의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1)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362호, 시행 2010.10.1)은 ‘테러’ 및 ‘폭력시위’를 대비한 한시적 법률로서 경호안전구역 내 집회시위를 최소 기간(11월 8일부터 12일까지)으로 제한하였으며, 군·경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투입 인원의 검문검색 등 경호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217).

간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한다(제2조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며(제3조 구성),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고, 기획단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며, 기획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으로 하고,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제6조 기획단).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의 단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7조, 경호안전통제단).

기타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수당), 제10조(운영세칙) 등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68호, 시행 2011. 6.24)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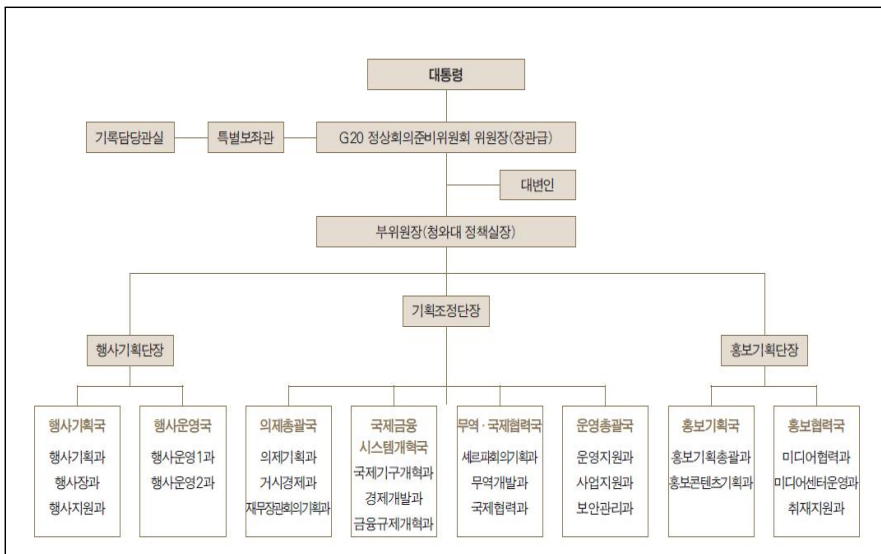
2. 추진조직

1)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 추진조직과 관련하여 ①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② 서울 G20 정상회의 협조체계 순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09년 11월 9일 설립과 함께 제1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홍보기획단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여 선제적인 기준의제 이행 및 신규의제 개발을 위한 G20 국가 간 의견 조율, 체계적인 행사 개최 준비, 의전, 종합적인 홍보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기획조정단은 거시경제, 금융 부문에서 경제수석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루어냈고, 의전과 행사 준비를 맡은 행사기획단은 외교

안보수석실과, 홍보기획단은 홍보수석실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외에도 G20 논의 주도를 위한 연구 수행, 의제 개발, 이슈 페이지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되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조직도는 <그림 1>과 같다(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34-36).



<그림 1>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조직도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2010년 10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린 ‘경호안전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기점으로 정상행사 기간 동안 국가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 임무를 시작하였다.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에서는 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통합근무를 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제 테러 및 폭력 시위에 완벽 대처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62호, 시행 2010.10.1.;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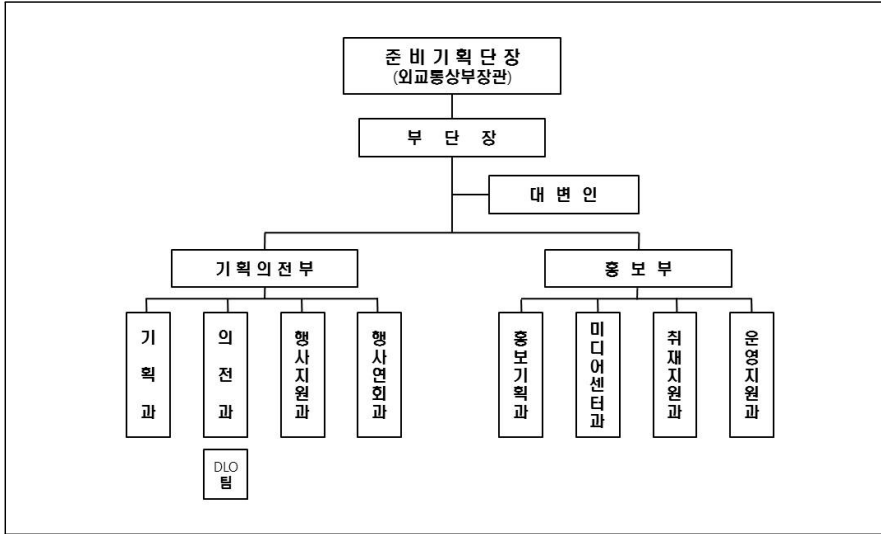
서울 G20 정상회의 협조체계는 최대 1만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였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대다수의 핵심 업무유관부처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어 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 수립이 추진되었다. 특히, 개최지 지자체인 서울시 및 강남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중요하였으며, 이 밖에 연계행사인 Business Summit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일부 행사준비의 기능적 필수분야를 담당할 법무부, 농식품부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행사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내부조직인 의제, 행사, 홍보 분야 간 긴밀한 소통 및 의견교환을 통해 행정력 낭비 및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48-49).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추진조직과 관련하여 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②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협조체계 순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0년 10월 5일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2425호, 시행 2010.10.5.)을 제정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에 관한 준비계획 수립, 준비사항 점검 및 평가, 정상회의와 관련된 기관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86-87). 이를 근거로 하부에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경호안전통제단이 조직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68호, 시행 2011. 6.24)에 근거하여 기획단 조직을 ‘2부 8과 1팀 및 대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도는 <그림 2>와 같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86-88).



〈그림 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조직도

경호안전통제단은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 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경호안전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경호안전통제단은 행사준비기간 및 행사기간 동안 주행사장 및 기타 행사장의 안전 확보에서부터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및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제단 업무 운영에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① 각종 위협(북한, 테러, 집회 및 시위) 대비책 수립 및 시행, ② 행사장별(회의장, 공항, 정상숙소 및 개별행사장) 경호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 ③ 기능별 경호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주요업무를 실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88).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협조체계의 경우에도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산하 준비기획단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립 및 역량 결집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준비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기관간 유기적 협조관계 수립 및 유지에 주력하였다. 준비 분야별로 준비기획단(의전·홍보), 외교통상부(의제), 경호안전통제단(경호·안전)을 중심으로 하고, 청와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위원회에 소속된 부처·기관

간 기능별 업무 분담을 통해 정상회의 제반 준비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정상행사장이 위치한 지자체인 서울시, 강남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103).

3. PCO²⁾

1) 서울 G20 정상회의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 PCO 선정을 위한 방침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은 국내 PCO 업계의 현실적 역량에 비추어 볼 때 G20 정상회의급의 대규모 행사를 단독으로 대행할만한 규모와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G20 정상회의 준비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별도의 PCO를 활용하였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42).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PCO는 ① 행사장 조성 PCO, ② 행사운영·참가지원 PCO, ③ 연회·이벤트 PCO 등 3개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행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은 G20 정상회의의 추진방향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분야별 PCO 선정이라는 기본 방침이 정해진 이후 실력과 열의를 갖춘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PCO 신청 절차에서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선정 과정과 결과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였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도 민간·공공 분야를 망라한 관련 전문가를 폭넓게 섭외하고 심사위원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가 당일 추첨 및 소집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5~8월 ① 행

2) PCO는 컨벤션기획업체(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과 함께 '국제회의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 법에는 국제회의업을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업의 종류를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 '국제회의시설업'과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법인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관광진흥법, 법률 제13594호, 시행 2016.3.23;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44호, 시행 2016.3.23).

사장 조성 PCO - COEX, ② 행사운영·참가지원 PCO - 인터컴, ③ 연회·이벤트 PCO - HS Ad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서울 G20 정상회의 PCO로 선정되었다(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227-228).

행사장 조성 PCO는 개최 후보도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장소는 코엑스라고 판단, 2009년 11월 9일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COEX 선정을 건의했으나, 일부 위원이 경호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여 여타 개최 가능한 장소 모색 등 실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행사기획단은 서울 및 인근 경기지역내 12곳을 답사하고, 후보장소를 COEX, 올림픽공원, KINTEX로 압축하여 정밀 비교작업을 실시하였다. COEX는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호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주변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제반 요건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 월등하게 양호했다. 경호안전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면서도 시민불편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기로 하고, 2010년 1월 18일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COEX를 선정하였으며, COEX 행사장 조성작업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건물과 시설물 훼손·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으로 조성업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비상대비 예비회의장은 경호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010년 5월 4일 제5차 준비위원회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선정하였으며, 타 주요 행사장 선정도 병행되었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37-38, 42).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57개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PCO를 적극 활용기로 하고, 국내 PCO 및 홍보대행사들의 전문성, 역량 등을 감안, 기능별로 특화된 복수의 업체 참여를 추진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PCO는 ① 행사장 조성 PCO, ② 회의시스템 및 참가 지원 PCO, ③ 문화행사 및 오·만찬 PCO, ④ 홍보대행사 PCO, ⑤ 미디어센터 세부조성 및 운영대행 PCO 등 5개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보안 유지 및 최적 업체 선정을 위해 참가 요건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100).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① 행사장 조성 PCO -

COEX, ② 회의시스템 및 참가 지원 PCO - 인터컴, ③ 문화행사 및 오·만찬 PCO - HS Ad 컨소시엄, ④ 홍보대행사 PCO - Fleishman Hillard 컨소시엄, ⑤ 미디어 센터 세부조성 및 운영대행 PCO - COEX 등 4개사가 서울 G20 정상회의 PCO로 선정되었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100-101, 331).

행사장 조성 PCO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 삼성동에 소재한 코엑스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2011년 6월 2일부터 준비기획단과 코엑스는 기본 도면을 바탕으로 행사장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고, 조달청과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 2011년 11월 계약 직전까지 기획단과 코엑스간 문안 협의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하여 예산을 절감하되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대행사 및 자문위원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기한 내 완벽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기획단 측의 입장을 전달하여 진행하였다. 기획단은 2011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장조성 용역 계약’ 중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6일에 1차년도 계약을, 2011년 12월 20일에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였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100-101).

IV.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개선방안

1. 국제회의 지원법규 정립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정치 및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제정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2호, 시행 2009.11.11.),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362호, 시행 2010.10.1.),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2425호, 시행 2010.10.5.) 등 관련법규가 기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7호, 시행 2015.9.28.)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7호, 시행 2015.9.28.)은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등 외교, 의전, 경호안전 주무부처의 업무추진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1조(목적)를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외교역량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포괄적 영역으로 개정하고,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도 “국무총리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타 조항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전 정부부처가 고부가 국제회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2호, 시행 2009.11.11.)은 대통령훈령으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362호, 시행 2010.10.1.)은 법률로 제정하여 그 체계가 맞지 않으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에는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2425호, 시행 2010.10.5.)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경호안전통제단을 한 번에 명시한 것이 특징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국제회의 지원법규 제정시에는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제정하여 지원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형식, 구성, 내용에 있어서도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개별 국제회의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홍보기획단을 두고 세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하였다. 반면,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산하에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의전부, 홍보부를 두고 세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하였다(그림 1, 그림 2 참조). 참고로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을 설치하고 회의준비본부, 사업추진본부를 두고 세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하였다(아시아·유럽정

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의준비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을 설치하고 준비기획실을 두고 세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하였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7691호, 시행 2002.7.30.). 이와 같이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는 공히 준비위원회 산하에 기획단, 경호안전통제단을 두고 국제회의를 준비한 반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는 준비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홍보기획단을 두는등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회의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앞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다수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조직구성을 명문화하고, 국제회의의 전담기획단을 상설 조직화하는등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맞는 조직 구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

국제회의의 의전경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시행 2013.12.12.)은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1호, 시행 2014.7.4.)은 제1조(목적)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시행 2016.3.3.)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에서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

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시행 2016.6.4.)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에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민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시행 2016.3.3.)이 제정되기 전에 대통령훈령으로 제정, 시행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337호, 시행 2015.1.23.)은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에서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민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해 대테러센터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 주목되며, 대통령경호실과 대테러센터의 역할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법률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

3.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

2010년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전사례(기본방향)를 살펴보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포함하는 정상급 인사 33명, 참석대표단 및

기자단 포함 8,000여명 참석, 1박 2일간 만찬과 오찬도 회의를 겸하여 진행되며, 정상, 재무장관, 세르파(약 150명)가 함께 리셉션 또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곧바로 각각 별도로 업무 만찬 및 오찬 실시, 위기대처를 위해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G8 Summit 등과 달리 개최된 횡수도 적어서 행사기능(logistics) 및 의전(protocol) 등에 관해 확립된 관행의 부재 등 한국에서 개최된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 보다도 규모가 크고 회의 및 기본일정 구성 등이 특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상들의 경호안전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참석자를 수용하고 업무중심의 회의일정을 편리하게 소화할 수 있는 행사장 선정 및 조성, 참석자 지원범위 및 대우 등에 관한 준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선정하고 행사준비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25-26).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전사례(의전원칙)를 살펴보면, 의전 원칙의 기본 방향은 첫째, 참가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며, 둘째, 예우 제공 범위·수준은 워싱턴 정상회의 및 주요 유사회의 전례와 우리의 실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셋째, 과공(過恭)을 지양하고 기능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되, 주최국의 환영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만의 섬세함을 가미한다는 것이었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96).

의전은 기본적으로 형식이며 형식은 관행의 축적이자 서로가 편하기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식에 구애받기 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잘하는 의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전 업무를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집으로 유연함을 견지하는 것이다(외교통상부, 2008: 8-9). 그러나 국제회의 의전사례는 국가 차원의 의전지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골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국제행사 관련부처의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살펴보면 그 체계가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행정자치부, 2014a; 행정자치부, 2014b; 외교통상부, 2012).

〈표 1〉 정부부처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 목차구성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정부의전편람(2014)]	[의전실무편람(2012)]
I. 의전	제1장 의전이란 무엇인가
II. 국가상징과 국민의례	제2장 국기
III. 정부의 의전 기준 및 절차	제3장 국가원수
IV. 국가의 경축·기념행사	제4장 외빈영접
V. 국가장 등 장례의식	제5장 국제회의
VI.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	제6장 연회
VII. 부록	제7장 외교사절 및 영사
[의전실무매뉴얼(2014)]	제8장 서열
I.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	제9장 외교문서와 축조위
II. 국가상징	제10장 상훈
III. 국경일 및 기념일 제도	제12장 장의식
IV. 대통령 외국방문 및 국민 영접행사	부록1
V. 주요인사 등 의전예우기준	부록2
VI. 의전행사의 기획 및 진행절차	
VII. 국장·국민장 등 장의의식	
VIII. 기타 정부행사	
IX. 지방자치단체 의전	

국회에서도 국회의의전편람(2004)을 통해 제1장 국가 및 국회의 상징, 제2장 의전서열, 제3장 국회의 의전행사, 제4장 외빈초청 및 영접, 제5장 연회, 제6장 상훈, 제7장 사교예절, 그리고 부록 등 일련의 의전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 입법부의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은 해당부처의 입장에서 해당부처에 국한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종합하여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PCO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

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형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 추진방향의 하나로 도입되었다(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227). 또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회의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대행사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국내 PCO, 홍보대행사들의 전문성, 역량 등을 감안하여 기능별로 특화된 복수의 업체 참여를 추진하였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100). PCO는 국제회의의 주최측과 더불어 국제회의의 의전의 큰 축을 담당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 및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의 PCO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지연선정 등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PCO 선정과정은 <표 2>에 정리하였다(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227;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46-47). 서울 G20 정상회의의 방대한 준비 과업을 감안할 때, 본 행사 개최를 불과 3~5개월 앞둔 시점에서 PCO가 선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서, 입찰 추진에 필수적인 관련 예산(예비비) 확보나 행사장 선정이 지연되어 연쇄적으로 입찰 절차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행사 준비 시에는 PCO 선정 입찰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44). 행사장 조성 PCO인 COEX의 경우는 행사장 조성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건물과 시설물을 훼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EX가 수의계약으로 조성업무를 대행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행사기획단은 동 수의계약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관계부처 의견을 조화하여 검토하여 수용하였으며 G20 정상회의급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나, 주회의장 내 음향울림(howling) 발생 등 일부 미비점이 노정되었다. 향후 보다 정숙한 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치밀한 음향 설계, 고가장비 사용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42;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306).

〈표 2〉 서울 G20 정상회의 PCO 선정과정

PCO		선정과정
행사장 조성 (COEX)	선정일정	- 2010. 2 COEX 내정 - 2010. 5.28 COEX 조성 용역계약 체결 - 2010.10.22 COEX 회의실 임대계약 체결
	선정기준	- 행사장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2010년 2월부터 COEX와 본격적 준비 협의를 거쳐 행사장 조성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행사운영·참가지원 (인터컴)	선정일정	- 2010. 5. 6 조달청 입찰공고 - 2010. 5.28 제안서 심사 - 2010. 7.23 조달청 계약 체결
	선정기준	- 조달청 입찰기준에 따른 선정
연회·이벤트 (HS Ad 컨소시엄)	선정일정	- 2010. 6.24 조달청 입찰공고 - 2010. 7.16 제안서 심사 - 2010. 9. 2 조달청 계약 체결
	선정기준	- 조달청 입찰기준에 따른 선정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PCO 선정과정은 <표 3>에 정리하였다(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12: 100-10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행사 개최를 불과 3~5개월 앞둔 시점에서 PCO가 선정된 것은 여전히 국가예산 등의 이유로 PCO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공적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사장 조성 PCO의 경우도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여전히 같은 업체인 COEX를 선정하고 있으며, 회의시스템 및 참가지원 PCO인 인터컴, 문화행사 및 오·만찬 PCO인 HS Ad 컨소시엄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동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정상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대행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준비기획단의 방침을 충족하고 있다.

〈표 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PCO 선정과정

PCO		선정과정
행사장 조성 (COEX)	선정일정	- 2011. 6. 2 행사장 조성 기초작업 시작 * 수의계약 체결 추진 - 2011.12. 6 조달청 계약 체결(1차년도) - 2011.12.20, 조달청 계약 체결(2차년도)
	선정기준	- 행사장 조성을 담당해야 하는 COEX 계약의 경우 대외 보안, 경호, 전문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로 결정
회의시스템 및 참가 지원 (인터컴)	선정일정	- 2011. 7.25 입찰 공고(경쟁 입찰) - 2011. 8.30 제안서 심사 - 2011.10.12 조달청 계약 체결
	선정기준	- 조달청 입찰기준에 따른 선정
문화행사 및 오·만찬 (HS Ad 컨소시엄)	선정일정	- 2011. 8.30 입찰 공고(경쟁 입찰) * 1개업체 입찰로 유찰 - 2011.10.11, 재입찰 접수 마감 * 2개업체 입찰 - 2011.10.14 제안서 심사 - 2011.10.18 조달청 계약 체결
	선정기준	- 조달청 입찰기준에 따른 선정 (1차 유찰)
홍보대행사 (FleishmanHillard 컨소시엄)	선정일정	- 2011. 9. 1 입찰 마감(제한경쟁 입찰) - 2011. 9. 8 제안서 심사 - 2011.11. 3 조달청 계약 체결
	선정기준	- 조달청 입찰기준에 따른 선정
미디어센터 세부조성 및 운영대행 (COEX)	선정일정	-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선정 - 2011.10.27 조달청 계약 체결 (2년 장기계속계약)
	선정기준	- 조달청 입찰기준에 따른 선정

서울 G20 정상회의 및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PCO를 COEX, 인터컴, HS Ad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정부 방침은 충분히 이해되나, KINTEX 등 기타 행사장 조성이 가능한 PCO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항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CO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지원법규 제정 시에는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지원법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형식, 구성, 내용에 있어서도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한편,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정부의전편람(2014) 및 의전실무매뉴얼(2014), 외교통상부의 의전실무편람(2012), 국회의 국회의전편람(2004) 등 국제행사 관련부처의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은 해당부처의 입장에서 해당부처 업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수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PCO는 2009년 제주에서 개최

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이후 국제회의의 주최측과 더불어 국제회의 의전의 큰 축을 담당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 및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상당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의 PCO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지연선정 등 일부 문제점이 노정된 만큼,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형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하여 PCO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비서, 경호 관련 연구 및 실무 관계자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회의의 자문단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재성(2014), 박미옥(2014), Cathy Key(2004), 황혜진, 김재연(2006), 이상철, 김태민(2006), 김태민, 김동제(2006), 박남권, 이영주, 윤명오(2012) 등의 선행 연구에 비해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를 제시했다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행사장 조성, 행사 진행, 행사 기능별 준비, 특별행사 준비 등 다양한 국제회의의 부문에 대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제회의 대상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후 정부자료, 민간자료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다른 국가가 주최한 국제회의와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5). 법률 제13499호(시행 2015.12.29.).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 대통령령 제26844호(시행 2015.12.31.).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2010). 법률 제10362호(시행 2010.10.1.).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 (2011). G20 정상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좋은생각좋은사람들.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9). 대통령훈령 제262호(시행 2009.11.11.).
-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2011).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제2권 준비와 성과. 서울: 금명문화.
- 관광진흥법(2016). 법률 제13594호(시행 2016.3.23.).
-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 대통령령 제27044호(시행 2016.3.2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2015). 대통령훈령 제337호(시행 2015.1.23.).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법률 제14071호(시행 2016.3.3.).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2016). 대통령령 제27203호(시행 2016.6.4.).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2015). 기획재정부훈령 제260호(시행 2015.10.27.).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5). 법률 제13247호(시행 2015.9.2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대통령령 제26540호(시행 2015.9.28.).
- 국회(2004). 국회의전편람. 서울: 인성기획.
- 김태민, 김동제(2006). 한국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12, 한국경호경비학회, 117-147.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2013). 법률 제11530호(시행 2013.12.1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대통령령 제25816호(시행 2014.12.8.).
- 박남권, 이영주, 윤명오(2012). 대규모 국제행사장의 경호경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0, 한국경호경비학회, 7-32.
- 박미옥(2014). 컨벤션 기업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2014). 서울시 의전실무편람.
- 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1999). 대통령령 제16326호(시행 1999.5.24.).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2002). 대통령령 제17691호(시행 2002.7.30.).
- 외교부(2016). www.mofa.go.kr. 검색일: 2016. 4. 9.
- 외교통상부(2008). 세계와의 소통, 국가의전 이야기.
- 외교통상부(2011). 2011 외교백서. 서울: (주)디어저스트.
- 이상철, 김태민(2006).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1, 한국경호경비학회, 203-226.
- 이재성(2014). 컨벤션 개최지 선호도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포지셔닝 비교 연구 - MDS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2012).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백서. 서울: 엔터블유기획정보.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1). 국무총리훈령 제568호(시행 2011. 6.24.).
-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2010). 대통령령 제22425호(시행 2010.10.5.).
- 행정자치부(2014a). 2014 정부의전편람.
- 행정자치부(2014b). 의전실무매뉴얼 - 큰 강은 소리내어 흐르지 않는다.
- 황혜진, 김재연(2006). 국제회의 의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비서학논총, 15(2), 한국비서학회, 31-49.

2. 국외문헌

- Cathy Key. (2004). The Keynote Guide to Planning a Successful Conference, Keynote Networks Ltd.

【Abstract】

Improvement Strategies on Protocol & Security System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Joo, Il-Yeob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tocol & security system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2010 Seoul G20 Summit,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laws. We should select a major agenc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coordinate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conference laws, resolve potential conflicts, maintain consistent on support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that control security relevant laws. We should solve clashes possibility between a few laws on security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protocol & secur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duce a joint protocol handbook of government for establishing protocol & security system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We should try to confirm protocol & security system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through publishing a joint protocol handbook of government from their own protocol handbook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etc.

Forth,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strengthen expertise of PCOs(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We should find and assist several PCOs for achieving government policy that develop industrial foundation o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rain human resources on international convention expected next generation of promising industries.

Key words : International Conference, Summit, Protocol & Security Systems, Conventions, PCO